

충남대학교 대학원 과학수사학과(과학수사학전공)
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수사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고 한다)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 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은 매 학기 1회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

③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하며 대상과목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한다.

④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자격시험은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⑥ 출제위원은 해당 과목을 강의한 담당 교수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전임교수 중에서 주임교수가 위촉할 수 있다.

⑦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⑧ 자격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제5조(외국어능력기준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TEPS 454점 이상
2. TOEIC 600점 이상
3. TOEFL(iBT) 57점 이상

4.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
제6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학생이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면,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인원 수는 3인으로 한다.

③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계획의 검토 및 승인,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대학원 규정 및 시행세칙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안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.

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
②학술논문 게재의 기준과 관련하여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 다만, 한 편 이상은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어야 한다.

③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⑤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논문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.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